

▶ 문의 : 지식경제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(02-509-724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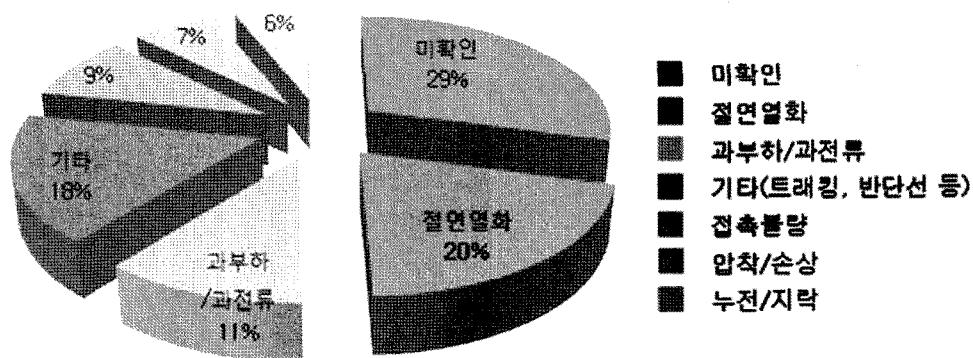
MKE 지식경제부

사고 다발 품목 및 위해도가 높은 전기용품에 “권장사용기간 표시제도” 도입

| 8월말까지 중소 수출기업의 신속한 준비 필요

추진배경

- 전기제품의 장기사용에 따른 부품의 열화로 감전, 화재 등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
 - 장기사용 제품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일정 기간 사용한 가전제품에 대해 권장사용기간 제시, 사용시 주의 환기 등 안전사고 방지 대책이 요구됨
- ※ '09년 9,391건의 전기화재 중 '전기제품/배선의 절연열화'로 인한 사고가 1,920건(20.5%)으로 가장 빈번, 자료 출처 : 전기안전공사, '09년도 전기재해 조사결과'



〈 '09년도 국내 전기화재 발생원인 분석 〉

권장사용기간 표시제도 개요

- 장기사용시 사고 다발 품목 및 위해도가 높은 전기용품을 선정하고, 이들 제품에 대하여 권장사용기간을 표시하여 사용자의 주의 환기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
 - ※ 일본의 경우 선풍기, 환풍기, 에어컨, 전기세탁기, 전기탈수기, TV의 5개 품목에 대하여 개별 제품의 안전기준에 권장사용기간 표시를 의무화
- 해당 품목에 대한 표준사용조건 (전압, 온도, 습도, 사용시간 등) 설정 및 표준사용조건에서의 권장사용기간 표시

안전점검제도 개요

- 소비자가 직접 보수하기 어렵고, 경년 열화로 중대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제품 (특정보수제품)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적절한 보수정보 제공 및 제조·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점검을 실시
 - ※ 일본의 경우 가스순간온수기, 가스버너부착욕조, 석유온수기, 석유욕조, 석유온풍난방기, 전기식기세척기, 욕실용전기건조기 7개 품목에 대하여 안전점검제도 실시
- 특정제조사업자는 특정보수제품을 보유하는 소비자 정보를 파악하여 점검의 필요성 통지 및 점검 실시를 할 의무를 가짐
 - ※ 일본의 경우 소형 가스온수기에 의한 사망 사고 이후 소비생활용품안전법에 22개조항을 신설하여 '08년부터 시행중

권장사용기간 표시제도 도입 계획

- (대상선정) 장기사용 전기제품으로 사고다발 및 위해도가 높은 품목 중 선풍기, 전기매트, 냉장고 등 7개 품목을 권장사용기간 표시 대상으로 선정
- (권장사용기간표시) 제조자간 수명기준의 상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 사용조건을 설정하고,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간을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표시
- (안전점검 제도검토) 권장사용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한 제조자의 안전점검 통보 및 실시는 소비자단체 및 제조자의 의견 수렴 후 도입 검토